

—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소득중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소득지원 융자금 이자를 경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소득지원기금 융자 이자의 종전 5%에서 3%로 금리를 경감 (안 제5조2항)
-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중 이자 면제(안 5조3항)
-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연체이자 산출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관례에 따라 적용하였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분쟁 방지(안 10조2항)

4. 참고사항

- 가계일반 신용대출 이자 대비표(조례 제정시와 현재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한 조례로서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융자대상 주민의 이자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개정 조례 안임.

- 또한,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이자를 면제하고,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적용 등 주민부담 경감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례 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.